

구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(안)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“구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(이하“협의체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
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
3. 지역보호체계 구축·운영
4.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위원) 위원장 및 부위원장,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.

제4조(권리와 의무) 위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체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가진다.

제5조(임원)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

1. 위원장 : 2명(동장 및 민간위원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)
2. 부위원장 : 1명
3. 간 사 : 1명

제6조(임원의 선출) 임원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 시는 보강한다.

제7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,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③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,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.
-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회의 등)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비밀준수 의무)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사례 관리 대상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의견의 청취)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